

세효과회계에 관한 각국의 동향*

정문현** · 노현섭***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세효과회계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동향 | 참고문헌 |
| III. 세효과회계 관련 각국 회계기준의 동향 | Abstract |
| IV. 미국의 세효과회계 동향 | |

I. 서론

최근 재무보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이 계속 공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회계기준이 세법상 손익인식기준과 괴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은 이러한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회계측면에서 조정하는 세효과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세효과회계(tax effect accounting) 또는 법인세배분회계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손익계산상 회계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이러한 차이 중 영구차이를 제외하고 일시차이에 국한함)에 대한 세금효과를 관련 회계기간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김광윤, 1998).¹⁾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4년 과제)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경남정보대학 경영정보계열 조교수

1) 세효과회계에 대한 연구는 세효과회계에 대한 법인세 기간배분의 논거, 세효과액의 계산·할인·계정처리 등의 재무제표의 표시, 각국의 제도상의 동향 및 국제회계기준의 세효과회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광윤(1998, pp. 283~288)은 과세표준계산단계의 차이(일시차이, 영구차이 및 결손금), 세액계산

1970년대 후반에, 세효과회계를 요구하는 회계기준을 가진 국가들은 소수였으나, 1979년에 국제회계기준 제12호가 승인되고 EC 제4호 지령 및 제7호 지령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가맹국의 國內法化되기에 이르렀고,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세효과회계를 요구 또는 허용하고 있다(弥永眞生, 1996).

미국의 경우, 1967년 APB의 Opinion No. 11 “법인세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Income Taxes)”가 발표된 이후 20여년간 적용되어 왔으며, 1987년에 FASB가 후속규정으로 SFAS No. 96 “법인세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Income Taxes)”를 공표하였으며, 1992년 2월에 SFAS No. 109 “법인세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Income Taxes)”를 공표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6년 3월 제7차 개정기준에서 세효과회계를 도입하였다.²⁾ 그러나 부칙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직까지 세효과회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효과회계의 국제적인 동향, 즉 세효과회계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동향, 세효과회계 관련 각국 회계기준의 동향과 국제회계기준과 각국의 회계기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세효과회계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나라의 세효과회계 관련 제도 설정과 관련 세무학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세효과회계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방식을 사용하여 국제회계기준, 각국 회계기준 및 미국의 세효과회계기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세효과회계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동향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세효과회계 관련 각국 회계기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각국의 회계기준 및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세효과회계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세효과회계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동향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은 제12호 “법인세

단계의 차이(이월세액공제)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분류, 평가방법(이연법, 자산·부채법, 세차감법), 평가범위(종합배분법, 부분배분법) 등 이연법인세의 인식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광윤(1998)을 참조.

2) 우리 나라 세효과회계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김광윤(1998, p. 282 및 pp. 294~296)을 참조.

(Income Taxes)”에서 세효과회계를 규정하고 있다. 동 공개초안 제33호(1989)를 거쳐 공개초안 제49호(1994)에서 그 개정이 제안되었다. 국제회계기준 제12호의 개정이 1996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1996년 10월에 공표되었다(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된다). 개정후의 국제회계기준 제12호는 대체적으로 공개초안 제49호와 같으나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³⁾

개정전 국제회계기준 제12호는 이연법(Deferral method)과 부채법(Liability method)의 선택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제12호는 부채법만을 인정하며, 일시차이의 개념에 따라 대차대조표 부채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109호 “법인세의 회계처리”(FAS 109)와 같은 방식이다.⁴⁾

<표 1>은 세효과회계를 적용범위, 평가방법,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기준, 이연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자산재평가의 효과, 관계회사와 종속회사의 미처분 이익, 재무제표상 표시, 이연법인세관련 공시 등의 관점별로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규정과 요약비교하고 있다(김광윤, 1998, pp. 289~293).

3) 개정 후 기준은 일시적 차이를 세효과회계의 대상으로 하여(paragraph 15, 24), 全面的 配分法을 채택하였다(paragraph 15, 24, Introduction의 paragraph 2). 단, 예외적으로, 종속회사, 관련회사 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대한 일정 투자, 비과세 정부보조금, 기타 자산 및 부채의 당초 인식시의 장부가격이 당초 과세표준과 다른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paragraph 15, 24, 39, 44). 또한 이연세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연세금자산·부채가 현실화할 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며, 세율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연세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채권·채무법)(paragraph 47). 이연세금자산의 인식기준으로는 감산 일시적인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래에 있어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probable) 것을 들고 있다(paragraph 24). 이월결손금에 따른 이연세금자산의 인식에 대해서도 일시적 차이에 따른 인식과 동일한 기준에서 인정한다(paragraph 34).

또한 세효과회계에 관한 공시로, 실제의 세지출(tax expense)과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또는 평균실효세율 및 적용세율)간의 조정표, 전기와 비교했을 경우의 평균실효세율의 변화, 이연세금자산·부채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의 종속회사, 관련회사 및 합작투자에 대한 투자에 따른 일시적 차이의 누계액, 중단된 사업에 관한 공시 등이 요구되고 있다(paragraph 81).

4) 개정 국제회계기준 제12호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109호와 더불어 부채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연세금자산·부채가 각 기간의 손익계산의 잔액차이로서의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이연법은 이미 이론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도 이전에는 APB 의견서 제11호에 따라 이연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부채법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킨 계기의 하나로 80년대 전반의 레이건 행정부의 세제개혁을 들 수 있다. 대폭적인 세율인하로 이연세금자산·부채 잔액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되어 이연법의 결함이 표면화되었다.

〈표 1〉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세효과회계 제도비교

| 구분 | 국제회계기준 (개정 IAS 12) | 미국 (FAS 109) |
|-----------------------|---|--|
| 적용범위 | 포괄배분법 단, 부분배분법의 예외 있음(관계회사지분법이익 등) | 포괄배분법 단, APB 23의 예외 경우 부분 배분법 적용 |
| 평가방법 | 자산·부채법 | 자산·부채법 |
|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기준 | 소극적 방법 : 차기 이후 과세소 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자산 인식함. 추후 매기 말에 미인식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을 재검토 | 적극적 방법 : 차감적 일시차이 와 결손금, 세액공제의 이월금 을 자산으로 인식함.(추후 실현 가능성이 50% 이하면 평가충당 금을 설정함) |
| 이월결손금의 이연 법인세자산 인식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자산재평가의 효과 | 재평가한 경우 이연법인세비용 을 인식하여 재평가 적립금에서 차감 | 규정 없음 |
| 관계회사와 종속회 사의 미처분이익 | 투자회사가 차이의 해소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차이가 예측가 능한 미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비용 을 계상해야 함 | 일시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해소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
| 재무제표상 표시 | <p><대차대조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유동 자산·부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① 당 해 기업이 당기법인세 자산· 부채를 상계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② 같은 세무 당국소관내의 동일한 기업(또 는 순액결재의도가 있는 타기 업)에 대해서만 상계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부채에 관련 있는 일시 차이의 세효과는 관련자산· 부채의 구분기준에 따라 유 동·비유동으로 구분 - 자산·부채와 관련 없는 차이 와 이월결손금의 세효과는 예 상되는 해소시기에 따라 유 동·비유동으로 구분(SFAS 37) -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은 금액비례로 유동· 비유동에 안분함 |

| 구분 | 국제회계기준 (개정 IAS 12) | 미국 (FAS 109) |
|---------------------|--|--|
| 재무제표상 표시 | <p><손익계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손익에 관련된 법인세비용 -외화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환산차이는 이연법인세에 반영되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세무서소관 내의 동일 세목의 경우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각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해야 함 |
| 공시 - 이연법인 세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비용의 항목별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당기법인세비용 b. 전기분의 당기조정사항 c. 일시차이의 발생·해소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액 d. 세율변동·세법개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액 e. 전기에 미인식된 결손금 세액공제, 일시차이 중 당기 법인세 비용의 감소 f. 전기에 미인식된 결손금, 세액공제, 일시차이 중 이연법인세 비용의 금액 g.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감 또는 전기평가감의 환입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비용 h. 당기손익에 포함된 회계방침 변경과 중대한 오류(IAS 8의 대체적 처리임)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액으로 표시된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의 각 총액 -평가충당금의 총액과 기중 변동액 -예외로 부분배분법(APB 23)이 적용된 경우의 일시차이유형과 누적액 |
| 공시 -기타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계정에 직접차감된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총액 -당기 중 인식된 특별손익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에 관한 설명(조정계산표) -직접연도와 비교한 적용세율 변동의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사업부문의 연도별 법인세비용과 관련된 다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당기법인세비용 b. 이연법인세비용(아래 영향분 제외) c. 투자세액공제 d. 국고보조금(법인세감소 인식분) e.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경감액 f. 특정 세금혜택을 자본에 직접배분하거나 인수된 기업의 영업권상각에 따른 법인세 g. 세법이나 세율의 변동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조정 |

| | | |
|-----------------|---|---|
| 공시 -기타 사항 | -각종의 일시차이·미사용 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상 연도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손익계산서상 이연법인세비용 | h. 미래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판단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충당금의 기초자산액수정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의 금액과 만기 -향후 세혜택이 배분될 이연법인세 자산평가충당금의 금액 |
|-----------------|---|---|

자료 : 김광윤(1998), pp. 290~294. <표 III-1> 수정.

III. 세효과회계 관련 각국 회계기준의 동향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효과회계 관련 회계기준이 있거나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⁵⁾ EC 제4호 지침이 개별재무제표에 관해 적어도 주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 제7호 지령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이연세금의 계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유럽 각국에서는 개별재무제표상 세효과회계를 요구하는 국가가 영국,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상장사), 아이슬란드(회계사협회 권고서) 등 10여 개국이 있으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나 연결상 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배적 실무인 국가가 프랑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이며, 적어도 주기를 요구하는 국가가 룩셈부르크, 그리스, 핀란드 등이며, 주기도 요구하지 않고 본문 공시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주요국가에서는 없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自國의 회계기준으로 채택하여 거의 완벽하게 또는 대부분의 내용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최소한 14개국에 이르며, 자국의 기준에 따라 세효과회계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기준의 내용은 국제회계기준 제12호), 대만, 홍콩은 세효과회계를 요구하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국제회계기준 제12호에 준거해 처리하고 있다.⁶⁾

5) 이 장은 弥永眞生(1996)을 요약하였다. 김광윤(1998)은 세효과회계를 적용범위, 평가방법,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 이연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자산재평가의 효과, 관계회사와 종속회사의 미처분이익, 재무제표상 표시, 이연법인세관련 공시 등의 관점별로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뉴질랜드, 대만, 영국의 규정과 요약비교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광윤(1998, pp. 289~293)을 참조.

6) 일본의 세효과회계 도입에 대해서는 古山和則(1999)를 참조.

<표 2> 세효과회계 도입국가

| 구분 | 본문 | | 주기 개별·연결 | 전면적 배분법 | 부분적 배분법 | 채권 채무법 | 이연법 | 부채법 | 차변 계상 | 요건 | 자산성 | 이월 결손금 |
|-------|----------|----|-------------|------------|------------|-----------|-----|-----|----------|-----|-----|-----------|
| | 개별 | 연결 | | | | | | | | | | |
| 영국 | 현행 | ○ | ○ | | ○ | ○ | | ○ | ○ | NP | ○ | BRD |
| | DP | - | - | | ○ | - | | - | - | - | - | S |
| 독일 | ○ | ○ | | | ○ | ○ | | ○ | AIO | ? | × | × |
| EC지령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랑스 | A | ○ | ○ | ○ | A | ○ | A | ○ | A | ? | ? | A |
| 벨기에 | ○ | ○ | ○ | ○ | A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 R | ? | R |
| 룩셈부르크 | △ | ○ | △ | ○ | A | A | A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 R | ? | R |
| 덴마크 | △ | ○ | △ | △ | △ | A | A | ? | A | VC | ○? | VC |
|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NP | ○ | BRD |
| 그리스 | N | △ |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A | A | ? | A | - | × | A |
| 포르투갈 | N | ○ | ○ |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N | △ | △ | | ○ | ○ | | ○ | A | VO? | ×? | VC |
| 스위스 | N | ○ | | △ | △ | A | A | ? | A | VC? | ○ | VC? |
| 스웨덴 | N? | ○ | | ○ | A | A | A | ? | A | ? | ? | ? |
| 핀란드 | N | A | A | A | A | A | A | ? | A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 | VC | ? | VC |
| 아이슬란드 | ○ | ○ | | ○ | A | ○ | | ? | A | ? | ? | A |
| 오스트리아 | 현행 | ○ | ○ | | ○ | ○ | | ○ | ○ | BRD | ○ | VC |
| | DP | ○ | ○ | | ○ | ○ | | ○ | ○ | P | ○ | P |
| 캐나다 | 현행 | ○ | ○ | | ○ | | | × | ○ | ? | × | VC |
| | 공개 초안 | ○ | ○ | | ○ | | | ○ | ○ | L | ○ | L |
| 미국 | ○ | ○ | | ○ | | | | ○ | ○ | L | ○ | L |

주) ×: 계상금지 △: 다른 △ 중 어느 것 강제 ○: 계상강제
 DP: 디스커션 페이퍼(discussion paper) N: 요구되지 않음 A: 허용됨
 ?: 불명(규정 없는 것 포함) R: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ND: 의심 없음
 L: 50%초과(be likely to) BRD: 합리적인 의심을 초과하는 확신 VC: 거의 확실
 P: 개인성이 높음(≒L) NP: 다른 차변항목에 대체되는 경우 없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음
 S: 강력한 증거 -: 대상에서 제외

자료: 弥永眞生, 1996, p. 92, <표 1> 수정.

세효과회계의 도입 움직임은 주로 네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다.

첫째, 유럽국가에 있어서 EC의 會社法指令(제4호, 제7호)이 세효과회계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舊EC국가들은 물론 EU 국가들 또한 비EU국가들에 있어서도 세효과회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국제화, 자금조달의 국제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이 각국의 회계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차츰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회계사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회계기준의 설정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엄격한 確定決算主義가 채택되어 있지 못하며 세효과회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회계기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넷째,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확정결산주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세효과회계의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해 온 국가에서도 개별재무제표의 세효과회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상당하며, 적어도 연결상 세효과회계를 도입하거나 또는 세효과회계의 공시를 요구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흔히 일부 국가에서는 확정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나, 세무상의 소득과 기업회계상의 소득간에 중요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비해 세효과회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이러한 경우와 다른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효과회계는 각각 특색이 있으며, ① 이연세금자산(이연세금의 차변)의 계상을 강제·인용하거나, ② 전면적인 배분법인가 부분적인 배분법인가, ③ 세율이 변경될 경우 이연세금을 수정 계산하거나(세율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이연세금을 수정 계산하는 방법을 債權債務法, 수정 계산할 수 없는 방법을 移延法이라 함), ④ 일시적인 차이에 주목하는가 기간차이에 주목하는가, ⑤ 결손금의 이월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연세금(차변)을 인식하는가 하는 등의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⑥ 이연세금에 자산성·부채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이론적인 문제도 있다.

전체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세금자산(이연세금의 차변)의 계상을 강제·인용하는 국가가 많으나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도 인식요건은 이연세금부채(이연세금의 대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⁷⁾

둘째, 全面的 配分法과 部分的 配分法의 채택상황에 관하여 전면적 배분법이 널리 채택되어 있으며, 미국의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은 전면적 배분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세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연세금의 산정을 수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국가가 많으며(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109호나 국제회계기준 제12호도 채권채무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준의 개정동향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넷째, 현재 기간차이에 주목하는 국가가 많으나 이는 일시차이와 기간차이 어느 것이 적절한가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종래의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제12호, 공개초안 제33호, APB 의견서 제11호 등)이나 회계학의 학설이 기간차이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의 동향은 분명하지 않다.

다섯째, 결손금의 이월이 인정될 경우에, 이연세금(차변)의 계상을 인정하는 국가(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109호, 국제회계기준 제12호는 인정하고 있다)는 '㉠'에 비해 소수이고 또한 단순한 이연세금자산(이연세금의 차변)의 계상요건보다 계상요건이 엄격화되어 있는 일이 적지 않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에서 계상을 인정한다면 계상을 인정하는 것이 整合性을 가지며 계상을 인정하는 국가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여섯째, '㉡'에 대해서는 태도가 불명확한 국가들도 있으나 負債性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인정되어 있다. 한편 자산성에 대해서는 이연세금(차변)의 계상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논의되어 있으며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많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

IV. 미국의 세효과회계 동향

이 절에서는 세효과회계에 대한 미국의 회계기준인 APB Opinion No. 11, SFAS No. 96과 SFAS No. 109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각 기준을 비교 분석한다.⁹⁾

7)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109호나 국제회계기준 제12호(개정 후)는 이연세금자산의 계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109호는 일정한 경우에 평가성충당금의 설정을 요구하여 국제회계기준 제12호(개정 후)는 이연세금부채의 인식요건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채택하고 있다.

8)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제12호(개정 후)는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109호도 資産性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9) 이 장은 間島進吾(2000), 中田信正(1996), 弥永眞生(1997), 弥永眞生·足田浩(1997), 寺坪 修(1998), 中田信正(1997) 萩原正佳(1997)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1967년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의 Opinion 제11호 “법인세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Income Taxes)”가 발표된 이후 20여년간 적용되어 왔다. 이후 1987년에 APB Opinion No. 11의 후속규정으로 SFAS(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제96호 “법인세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Income Taxes)”를 공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1989년 3월에 SFAS No. 96의 수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약 3년간에 걸친 작업 후에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1992년 2월에 SFAS 제109호 “법인세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Income Taxes)”를 공표하였다.¹⁰⁾

APB Opinion No. 11은 손익계산서상 세차감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적정하게 대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연법(deferred method)을 법인세의 계산근거로 하고 있다. 회계상 인식된 법인세는 세차감전이익에 영구차이(permanent difference) 항목을 가감한 금액(세무상 및 회계상 과세소득)에 당기의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연세금은 회계상의 법인세와 세무상 납부할 세액¹¹⁾과의 차액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의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는 손익계산서에서 대체된 이연세금의 누적잔고를 의미할 뿐이다. 또한 APB Opinion No. 11은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상 이연세금자산 또는 부채계상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SFAS No. 96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를 적정히 산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부채법(asset and liability method)를 계산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SFAS No. 96은 대차대조표상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를 먼저 적정하게 산정하고 이들의 기초와 기말의 순증감액이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소득액을 구성하는 이연세금에 대체된다. SFAS No. 96은 예를 들어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율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영향액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이연세금자산 또는 부채잔액을 수정하고 그 수정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소득액을 구성할 이연세금에 대체된다(SFAS No. 109도 이 점은 동일함).

10) SFAS No. 96이 간행된 이후 SFAS No. 109가 공표되기 전의 기간동안, SFAS No. 96의 적용시기가 3번이나 연장되었다.

미국의 상장회사 600사에 대해 수행된 1991년도의 공표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에서, 2/3에 해당하는 410개 회사가 SFAS No. 96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ICPA, 1992, p. 309).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SFAS No. 96을 적용하지 않고 APB No. 11로부터 SFAS No. 109로 직접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손익계산서상 세차감전이익에 영구차이와 당기에 발생한 또는 실현된 일시차이 항목을 가감하고 세무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이것에 당기의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3> APB No. 11, SFAS No. 96과 SFAS No. 109의 비교

| 구분 | APB No. 11 | SFAS No. 96 | SFAS No. 109 |
|-------------------|---|--|--|
| 방법 | 이연법 | 자산·부채법 | 자산·부채법 |
| 목적 | 손익계산서상 세차감전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적정하게 기간대응시킴 | 기말의 미납부법인세 및 환급법인세의 인식과 함께 재무제표상에 인식된 항목만을 고려하여 산정된 이연조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함 | 기말의 미납부법인세 및 환급법인세의 인식과 함께 재무제표 또는 세무신고서상에 인식된 항목이 장래 세무계산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여 고려하여 산정된 이연조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함 |
| 접근방법 | 손익계산서 중시사고 | 대차대조표 중시사고 | 대차대조표 중시사고 |
| 법인세 또는 법인세율의 변경 등 | 대차대조표상의 이연조세자산 또는 부채 잔액의 수정 없음 | 법인세 또는 법인세율의 변경의 경우 그 영향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이연조세자산 또는 부채 잔액을 수정 함 | SFAS No. 96과 동일하게 처리함 |
| 이연세금 자산 |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 일시차이 항목을 인식함 | 당기 또는 전기 이전에 납부한 법인세가 (일시차이 항목의 실현에 의해) 환급된 범위 내에서만 인식함 | 실현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식함 |
| 대차대조표 표시 | 원칙적으로 이연세금의 원인이 된 자산, 부채가 유동자산·유동부채인 경우에는 이연세금도 유동자산·유동부채로 분류되고, 이연세금의 원인이 고정자산, 고정부채인 경우에는 이연세금도 고정자산·고정부채로 분류됨. 이연세금이 발생된 원인이 대차대조표 항목과 관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차이 항목이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고정부채로 분류함 | 일시차이(순액)가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연세금은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고정부채로 분류됨 | APB No. 11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 |

〈표 3〉 APB No. 11, SFAS No. 96과 SFAS No. 109의 비교(계속)

| 구분 | APB No. 11 | SFAS No. 96 | SFAS No. 109 |
|---|---|--|--|
| 이월결손금의 세금효익 1. 이연세금자산의 인식 2. 실현시 | 실현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확실시 되는(assured beyond any reasonable doubt) 경우에 인식되는 손익계산서상의 특별항목으로 처리됨 | 1. 인식하지 않음 2. 손익계산서상의 당기법인소득세액에 직접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 1. 실현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식함 2. SFAS No. 96과 동일하게 처리함 |
| 매입법(Purchase business combinations) 1. 자산부채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수입평가액과 세무상 평가액과의 차이 2. 취득한 이월결손금의 세금효익의 사후 인식 | 1. 이연세금자산 또는 부채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수입한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액에서 직접 감액함 2. 먼저 영업권과 무형고정자산을 0까지 감액하고, 잔액이 있으면 소극적 영업권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계상함 | 1. 이연자산 또는 부채를 별도로 인식함 2. 먼저 영업권과 무형고정자산을 0까지 감액하고, 잔액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를 대변에 계상함 | 1. SFAS No. 96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함. 단, 이연세금자산은 50%를 초과하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식됨 2. SFAS No. 96와 동일하게 처리함. |
| APB No. 23의 예외규정 1. 국내의 종속회사 및 joint venture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연세금부채 2. 외국의 종속회사 등의 투자에 대한 이연세금부채 3. 저축금융기관의 (세무상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있음)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연세금부채 | 1.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고 종속회사 등에 채투자하는 지배회사의 의도가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지 않음 2.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의 매각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지 않음 3.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지 않음 | 1. APB No. 11과 동일하게 처리함. 2. APB No. 11과 동일하게 처리함. 3. APB No. 11과 동일하게 처리함. | 1.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회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2년 12월 16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여야 함 2. APB No. 11과 동일하게 처리함. 3. 1988년 1월 1일(기준연도) 이후 추가 계상된 세법상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여야 함 |

| | | | |
|---|---|---|--|
| <p>4. 주식형태에 의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의 잉여금에 대한 이연세금부채</p> <p>5. 미국의 汽船會社の 법정준비금에 대한 이연세금부채</p> | <p>4.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지 않음</p> <p>5. 원칙적으로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지 않음</p> | <p>4. APB No. 11과 동일하게 처리함.</p> <p>5. APB No. 11과 동일하게 처리함.</p> | <p>4. 1992년 12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잉여금에 대한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여야 함</p> <p>5.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함. 단, 1992년 12월 14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일시차이에 대해 이 일시차이가 실현될 때 또는 SFAS No. 109의 채택시에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함</p> |
|---|---|---|--|

자료 : 間島進吾(2000), p. 125, 표 수정.

또한 SFAS No. 96은 재무제표상 이미 인식된 항목만이 이연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일시차이 이외에는 장래의 과세소득(또는 소득공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the breakeven assumption)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연세금자산에 따라 장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과세소득은 0으로 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장래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일시차이 항목이 언제 실현하고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귀속시기(timing)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¹²⁾

SFAS No. 109는 이연세금의 계상근거를 자산부채법으로 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SFAS No. 96의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있으나, 이연세금자산의 계상기준, 스케줄링, 이연세금부채 등에 대해 수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이연세금자산의 계상기준으로, 장래 과세대상이 되는 일시차이 항목에 따라 이연세금자산을 일단 전액 인정한 후에 당해 이연세금자산 중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more likely than not)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평가계정에 계상된 이연세금자산을 감액한다. 즉, 실현가능성이 50%가 넘는 이연세금자산(순액)을 인식한다.¹³⁾ 둘째, 스케줄링으로,

12) 장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을 0으로 가정하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모순되고, SFAS No. 96의 인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 이연세금자산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때에 SFAS No. 96에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던 장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과세소득을 고려한다는 것이 차이가 난다.

SFAS No. 6에서 요구되었던(일시차이 항목이 장래 언제 실현되는가를 검토하는) 스케줄링의 작성 필요성이 없어 졌다. 이것은 장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견적한 후에 일시차이 항목의 실현가능성이 검토됨으로써 엄밀한 의미의 스케줄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연세금부채로, APB Opinion No. 23에 규정되어 있던 포괄적 이연세금부채의 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을 수정하고, 원칙적으로 이연세금부채를 계상하도록 하였다.¹⁴⁾

SFAS No. 109에 따른 법인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세무상 납부할 세액(current taxes)을 산정한다. 다음으로 기말 대차대조표상 이연세금자산 및 이연세금부채를 산정하고 이들의 기초와 기말의 순증감액을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를 구성할 이연세금에 대체한다. 당해 이연세금액과 세무상 납부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가 된다.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그룹의 각 기업이 단독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연결그룹 전체의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액[즉 납부할 법인세(current tax)와 이연세액(deferred taxes)의 합계액]이 연결그룹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연결그룹의 각 회사가 단독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인세액이 각 회사에 배분되는 방법이 적절한 회계방법이다.¹⁵⁾ 따라서 연결회사가 일시차이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법인세액만 배분되고 이연세액이 배분되지 않는 방법, SFAS No. 109의 자산부채법 이외의 방법(예를 들어, APB Opinion No. 11의 이연법)에 의해 이연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연결그룹 전체가 법인세액이 0인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연결대상회사에 대해 납부할 세액 또는 이연세액이 배분되지 않는 방법 등은 적정하지 않다. 또한 연결그룹에 따른 법인세배분계약(tax-sharing agreement)이 SFAS No. 109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 그 배분차이 금액은 연결대상회사의 단독 재무제표상 주주지분의 조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V. 결 론

세효과회계는 기업회계와 세법규정과의 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하여 개발된 회계처리방법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식을 사용하여 세효과회계와 관련된 각국의 회계기준의 동

14)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제시된 APB Opinion No. 23의 예외규정을 참조.

15) 연결에 있어 세효과회계의 적용과 寺坪 修(1998), 中田信正(1997) 등을 참조.

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세효과회계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동향을 개관하고, 세효과회계 관련 각국 회계기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제회계기준과 각국의 회계기준 및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세효과회계 동향을 살펴보았다.

1979년에 국제회계기준 제12호가 승인되어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세효과회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PB의 Opinion No. 11 “법인세의 회계처리 (Accounting for Income Taxes)”가 발표된 이후 SFAS No. 96와 SFAS No. 109가 공표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세효과회계를 도입하여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세효과회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효과회계의 국제적인 동향(즉, 국제회계기준, 각국 회계기준 및 미국의 세효과회계 기준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나라의 세효과회계 관련 제도설정과 관련 세무학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의 경영자,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는 세무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경영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경영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도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김광윤, “한국 법인세회계의 동향과 과제: 재무 및 세무회계적 관점,” 세무회계학연구 제1권 (1998년 12월), pp. 281~302.
2. 김광윤·곽병기, “상장법인의 이연법인세회계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1998. 8).
3. 오성렬, 우리 나라 법인세기간배분회계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1996.
4. 최상문·김정교·조용언, 중급회계, 무역경영사, 2000.
5. 間島進吾, “米國における稅效果會計の現狀,” 企業會計 第52卷 第6号(2000年 6月).
6. 古山和則, “稅效果會計の導入,” 企業會計 第51卷 第3号(1999年 3月).
7. 弥永眞生, “稅效果會計をめぐる 國際會計基準の改訂 および 各國の 會計基準の 動向,” 企業會計 第49卷 第5号(1997年 5月).
8. 弥永眞生·足田浩, 稅效果會計, 中央經濟社, 1997.
9. 寺坪 修, “連結における稅效果會計全面的適用の意義,” 會計 第154卷 第2号 (1998年 2月).
10. 李善馥, “韓國會計基準の改正とその意義,” 企業會計 第48卷 第11号(1996年 11月).
11. 中田信正, “稅效果會計の現狀と本格的導入への課題,” 企業會計 第48卷 第1号 (1996年 1月).
12. 中田信正, “連結における稅效果會計,” 企業會計 第49卷 第1号(1997年 1月).
13. 萩原正佳, “稅效果會計- 貸借對照表 負債法の採用,” 企業會計 第49권 제7호 (1997년 7월).
14.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AICPA), *Accounting Trends and Techniques*, 1992.
15. Accounting Principles Board(APB),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PB Opinion No. 11, 1967.
16. Accounting Principles Board(APB), *Accounting for Income Taxes-Special Areas*, APB Opinion No. 23, April 1972.
17. Behn, B. T. Eaton and J. Williams, “The Determinants of the Deferred

- Tax Allowance Account under SFAS No. 109," *Accounting Horizon* (March 1998), pp. 63~78.
18. Deloitte & Touche LLP, *Accounting for Income Taxes—An Analysis of FASB Statement No. 109*, 1992.
 19.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FAS) No. 109*, 1992
 20.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FAS) No. 96*, 1987.
 21. Hongren, C., G. Sundem, and J. Elliott, *Introdu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6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1996.
 22.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IASC), *Income Taxes*, IAS No. 12 (revised), October 1996.
 23.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Survey of the Use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1988.
 24. KPMG Peat Marwick, *Accounting for Income Taxes—Analysis of FASB Statement 109*.
 25. Miller, G. and D. Skinner, "Determinants of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under SFAS No. 109,"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98), pp. 213~233.
 26. OECD, *Accounting Standards Harmonization No. 3 : Income Tax Accounting*, OECD, 1987.

Abstracts

A Review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Jung, Moon-hyun · Roh, Hyun-sub

In this article, we perform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or income taxes). Specially, we compare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of U.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principal component of U.S.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is as follow.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09,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109)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multi-year process in whic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reviewed and subsequently modified the requirements for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109 requires an "asset and liability" approach for the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at is, deferred income taxes are viewed as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irm, and deferred tax expenses id determined by the current-year change in the firm's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assets. Previously, 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No. 11,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PB No. 11) required a "deferral" approach to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e primary intent of the deferral approach was to match tax expense with corresponding revenues and expenses for the year in which the revenues and expenses were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Unlike the SFAS No. 109, APB No. 11 did not require firms to adjust deferred tax balances for subsequent events such as changes in tax rates or laws.

And, the principal deference between SFAS No. 109 and the previous statement on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96, is that SFAS No.

109 requires firms to recognize deferred tax assets for the tax benefits of tax credit or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no matter how likely the firm was to realize these benefits, and this was one of the reasons for its demise.